##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57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양정숙·윤준병·서영교

김홍걸 · 이용빈 · 안호영

조오섭 · 이상헌 · 김종민

윤재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은 보안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요 보안사항에 대한 인증제도를 고시에서 마련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공공기관"을 "국가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는 공공기관이"를 "국가기관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를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한다"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 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보안인증의 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u>공공기관</u> 의 클라우드컴퓨	제20조( <u>국가기관등</u> 의 클라우드컴	
팅서비스 이용 촉진) <u>정부는</u>	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	
<u>공공기관이</u> 업무를 위하여 클	<u> 가기관등은</u>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u>	
<u>&lt;신 설&gt;</u>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u>여야 한다.</u>	
<u>&lt;신 설&gt;</u>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신뢰성 향상) ① (생 략)	제23조(신뢰성 향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		
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		

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5	<u>  한인증기준</u>	<u>"이라 한다</u> -

---

- ③ (현행과 같음)
-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으로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 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기 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결 과에 따라 보안인증의 유효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보안인증의 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 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 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7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1.</u> ~ <u>4.</u> (생 략)

② (생략)

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 야 한다.

-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한 자
-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